

“한마디로 귀환 포로에 대한 대우는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들에 대한 기본적 자료 축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생존포로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 파악이 급선무이지만, 구체적인 송환대책 수립과 지원방안도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즈음해●

1998. 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원회관 504호)
TEL. 788-2922/784-5708 FAX. 788-3504

국회의원 김복동
(자유민주연합/대구 동갑)

기록자료장		
등록일	등록부	기록자
	1319	

정책자료집 98-1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즈음해●

발간에 즈음하여

“귀환 포로에 대한 대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된다”

조창호 소위와 양순용, 장무환씨 등의 생환에 이어 또 다시 국군포로 2명이 귀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인지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 없다.

향후 국군포로들의 귀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병이 포로가 된 경우 병으로서 해당기간 만료의 보수외에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북한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북한주민에 적용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주거지원과 정착금 지급을 해온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조창호 소위의 귀환은 반세기 가까이 망각속에 묻혀있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바 있다. 그 이후 한국전쟁의 포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던 차에 97년 말 양순용씨의 귀환과 98년 장무환씨의 귀환으로, 아직도 북한 지역에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국의 포로로 역류중 귀환한 자의 지원대책 미비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가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포로로 본의 아니게 불잡혀 반세기 가까이 억류되어온 포로들이 국가의 구출을 손꼽아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그들 자력으로 조국의 품에 돌아온 후에도 그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국가적 이미지 관리 차원은 물론, 국가의 대국민 신뢰도 측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행중 다행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전쟁포로에 대한 기본적 자료파악과 송환대책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할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또 포로생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응분의 예우와 치원이 주어지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군포로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포로/실종자 등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로/실종자 확인법>을 이미 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국방성에 전담 차관보를 두고 한국전 전사자 유해송환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매년 9월 16일을 포로/실종자 추념일로 지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세계인들로부터 미국을 “조종사 한명도 끝까지 구출하는 나라”로 기억되게 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도 포로구출을 위해 특공대를 조직, 적국에 침투시키는 등 구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전사자 유족은 성골로 대우하는 등 국가의 의무를 다함으로서 “포로와 실종자를 잊지않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국가 위난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마디로 귀환 포로에 대한 대우는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들에 대한 기본적 자료 축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생존포로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 파악이 급선무이지만, 구체적인 송환대책 수립과 지원방안도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그동안 논의된 국군포로에 대한 주요자료를 담아보았다. 국군포로에 대한 기초적 자료집 발간이 처음이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아무쪼록 이 자료집 발간을 통해 북한에 남아 긴 세월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심어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자료 제공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인터뷰에 적극 응해주신 양순용씨와 귀환후 새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조창호, 장무환씨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경의와 격려를 보낸다.

1998년 12월

국회의원 김복동

발간에 즈음하여

I. 서론 / 9

II. 포로의 범위 · 대우 · 노동 · 석방 / 12

- 제네바협약을 중심으로 -

1. 포로의 범위 / 12
2. 포로의 일반적보호 / 13
3. 포로의 억류 / 13
4. 포로의 노동 / 14
5. 포로의 노동임금 / 15
6. 포로의 석방 / 15

III. 포로의 현황 / 16

1. 전황별 포로발생 실태 / 16

- 1). 북한 남침기
- 2).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
- 3). 중공군 침공기
- 4). 유엔군 재반격기
- 5). 교착전기
- 6). 종전기

2. 포로실태 / 20

- 1). 유엔군측 주장
- 2). 인민군
- 3). 중공군
- 4). 우리측 자료
- 5). 포로실태

3. 포로협상 및 처리 / 28

- 1). 포로협상 경과 및 국제관계
- 2). 포로의 처리

4. 미송환포로 및 생존포로 / 37

IV. 공산군측의 포로 대우 / 39

1. 북한의 포로정책 / 39

- 1). 전쟁기간중
- 2). 정전협정후

2. 공산군측의 포로의 관리 / 43

- 1). 전쟁기간별 관리실태
- 2). 인민군 및 중공군 포로관리 실태
- 3). 포로수용소 실태
- 4). 포로의 탈출

V. 포로의 북한역류생활 실태 / 51

1. 포로직업 / 51

2. 포로의 결혼 / 52

3. 포로의 북한생활 / 52

4. 포로2세 / 53

5. 생존포로의 실태 / 54

VI. 포로송환의 법적근거 / 56

1. 포로송환의 법적근거 / 56

- 1). 제네바협약
- 2). 한국전쟁 휴전협정

2. 북한의 포로송환거부의 법적근거 / 58

VII. 국군포로 관련법의 주요내용 / 60

1. 현행관련법 / 60

- 1). 군인사법
- 2). 군인연금법
-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63

- 1). 제안의 배경
- 2). 주요내용

VIII. 국군포로 송환대책 / 66

- 1. 국내 대책 / 66
- 2. 남북관계에 따른 대책 / 70
- 3. 국제기구 활용방안 / 73

IX. 맷음말 / 78

<부록>

- 1. 포로 사건 및 관련 일지 / 81
- 2.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 86
- 3. 양순용씨 증언 녹취록 / 89

<참고 자료>

I. 서 론

1994년 조창호 소위가 귀환하면서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동안 까맣게 잊고 있는 동안에도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전협정으로 이미 오래전에 송환되었어야 할 국군포로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적 차이로 발발한 한국전쟁의 후과로 45년 가까이 북한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강제억류되어 왔던 것이다.

전후처리중 포로송환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전쟁의 특수성에 기인했고, 그후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당시 20대의 청년을 오늘날 생사불명의 70대 노인으로 만들었다.

한국전쟁에서는 인민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관리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했고, 역시 국군포로 교환협상 또한 미국을 포함하는 유엔군이 담당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군 단독으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휴전협상에 거부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포로처리에 관해서도 방관자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되어서 공산군측 포로처리에 대한 우리측 자료는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3년간 전쟁에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휴전협상을 하면서도 남북 쌍방간의 심각한 감정 및 이념대립과 각기 다른 국내사정(남:정전반대, 북: 전후복구)으로 상대방 포로의 송환을 거부하는가 하면, 강제로 군에 편입시키고 강제노동을 시켰다.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협약의 정식 서명국가로서 법적 구속력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약에 대해 자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으로 끝난 것도 수만명의 미송환 포로를 발생토록한 원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타민족, 국가간 분쟁)이 끝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던 제네바협약이 내전형 이념분쟁의 성격과 미국과 중국 등의 참전하는 국제전

이 혼재된 한국전쟁의 특수성 때문에 또 다시 적용하고 이행하는데 많은 허점이 노정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정권이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송환노력이 미흡했고, 실종자 유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수 있다.

최근 귀환자와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대부분 70대의 고령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등 최하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창호, 양순용, 장무환씨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다수의 국군포로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인도적인 차원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정통성 차원에서 또한 후세들의 애국정신과 국가관을 함양함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국군포로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게 되었다.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의 빈곤이었다. 일부 국제법학자의 국군포로문제를 다룬 몇 편의 연구논문외에는 탈북자와 귀순자, 생환한 국군포로 세사람의 증언을 단편적으로 실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시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 당국이 국군포로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작업이 끝날때 까지 내내' 지울수가 없었다.

본 자료집에서는 본문의 간결함을 위해서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수치와 도표, 그림 등에는 출처와 해석을 달았고, 탈북자·귀순자·귀환 국군포로의 증언과 양순용씨와 면담, 기존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와 해석을 일일이 달지는 않았다.

자료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했다. 제 I 장에서는 미송환포로 발생의 경과에 대해 서술하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II장에서는 포로문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제네바협약 포로관련 조항을 살펴봄으로 남북한 양측이 협약을 준수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III장에서는 관련자료를 통해 한국전쟁의 전반적 상황을 고찰하므로 포로발생의 배경을 이해하고 포로처리 과정 및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수록하였고, 처리되지 못한 미송환포로의 수를 나름대로 산출해 보았다.

제IV장에서는 북한의 포로정책 및 포로관리 실태를 전쟁기간과 정전협정후로 세분화하여 공산군측의 포로대우를 살펴보았다.

제V장에서는 양순용씨등 귀환·탈북자의 면담과 증언, 자료를 토대로 40여년간 적대계층으로 살아 온 국군포로의 직업·결혼·생활·2세의 실상을 대해 살펴 보았다.

제VI장에서는 포로송환의 근거로 제네바협약, 휴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관련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한 북한이 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배경과 법적 근거를 조명해 보았다.

제VII장에서는 국군포로 관련법을 조문별로 제시하여 협행법으로서의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 제정된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제VIII장에서 포로송환의 시간적인 제약과 남북한 협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국제·남북한 관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모색하였고, 제IX장에서 맷음말로 마무리 했다.

II. 포로의 범위 · 대우 · 노동 · 석방

- 제네바협약을 중심으로 -

국군포로 문제를 이해하는데는 한국전쟁의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제네바협약 중 포로관련 부분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협약에 가입은 않았지만, 협약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당시 제네바협약 외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나 관습법이 없었다.

국군포로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 우선 제네바협약 중 포로관련 주요부분을 조문별로 요약했다.

1. 포로의 범위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7월12일자 제네바협약」을 개정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8월12일자 제네바협약」 제 4조에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포로(prisoners of war)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나.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내외에서 활동하는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다.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라. 실제로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에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 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선장, 수료안내원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같이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한국전에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측의 종군자 및 군무원, 경찰간부·비간부, 경찰애청원, 학도의용군도 포로가 되는 것이다.

2. 포로의 일반적 보호

“포로는 적국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체포한 개인이나 군부대의 권리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억류국은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포로에 부여하는 대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협약 제 12조).

“억류국은 포로가 된 자를 가능한 신속히, 그들에게 위협이 없을 정도로 전투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수용소로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의 군대가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후송하여야 한다.”(협약 제19조, 20조).

이외에도 “교전국은 전쟁개시 직후 포로의 수용·이동·석방·도주·입원 및 사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정보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公私의 모든 조회에 답하며, 송환·석방·도주·사망등으로 포로가 남긴 모든 유류품을 모아 관계국에 송부하여야 한다.”(협약 120, 122조)

북한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포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포로의 억류

“억류국은 포로를 억류할 수 있으며, 형벌 및 징계벌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포로는 엄중하게 감금되어서는 안된다. 포로는 이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불완전 또는 완전 석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자유를 수락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협약 제21조)

“억류국은 포로를 그들의 국적과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수용소에 집결시켜야 한다.”(협약 제22조). 즉 억류국은 동일 수용소내에 국적·언어 및 관습을 달리하는 포로들을 수용할 수 없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포로를 둘 이상의 수용소 또는 수용소안에 구획을 나누어 수용하여야 한다.

북한은 규정을 위반하여 강압적으로 인민군에 편입시키는가 하면, 이를 불복하면 혹독한 매질과 형벌을 가했다.

4. 포로의 노동

한국전쟁중 포로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강압적인 인민군 편입과 함께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다.

“억류국은 특히 포로들의 연령, 성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하사관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감독의 일 이외의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들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협약 제49조)

또한 “포로들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된 노동과 농업, 원료의 생산 또는 채취에 관련되는 산업, 야금업·기계공업·화학공업을 제외한 제조공업, 가내공업, 상업 및 예술과 공예, 군사적 성질·목적을 가지지 않는 토목업과 건축업 및 공의사업에 한하여 이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또한 “포로들의 노동시간을 과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억류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노동에 고용되고 있는 당해 지방의 민간인 노동자에게 허용되는 바를 초과하지 못한다.”(협약 53조)라는 동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쟁초기부터 한국군 포로 대부분을 인민군 군사조직에 강제편입시켜 5백~2천명 단위의 수 많은 ‘포로노무부대’로 편성, 폭격으로 파괴된

비행장·철도·교량·저수지 그리고 공장건설과 도시복구 공사, 군부대 진지공사에 동원했다. 장교출신인 조창호 소위도 강제노동을 하며 비행장 복구공사, 군수공장에서 포탄을 만드는 작업에 강제동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물론 노동시간을 지키지도 않았다.

5. 포로의 노동임금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 임금은 억류당국이 정하는 여하한 경우에도 노동일에 대하여 4분의 1 스위스프랑 미만이어서는 안된다.”(협약 제62조)

“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하여야 하며, 병장이하는 8 스위스프랑, 병장·하사관은 12 스위스프랑, 준위 및 대위등 위관급은 50 스위스 프랑, 소령·중령·대령등 영관급은 60스위스프랑, 장관급 장교는 75 스위스프랑을 억류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협약 제60조)

98년 12월 현재 1 스위스프랑은 우리돈 925원 정도이며, 노동임금은 고사하고 생사의 갈림길로 내 몰았다.

6. 포로의 석방

동 협약 제 118조에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송환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라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자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포로를 송환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애당초 포로의 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10만명 넘는 포로중 불과 8천여명의 포로만 송환하고, 모두 억류해 버렸다.

III. 포로의 현황

1. 戰況別 포로 발생 실태

한국전쟁에서 포로문제는 휴전협상의 중심의제가 되어서 전쟁 흐름에 까지 영향을 끼치며, 3년간의 전쟁기간중 포로문제로 휴전협상 타결이 2년 동안 지연된 것은 세계전쟁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로문제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쟁상황을 6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포로 발생의 배경과 발생추이를 조명해 보고자 했다.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유엔군측 및 공산군측 국가들중 한국전쟁과 관련, 전반적으로 조명된 자료를 발간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자료는 전쟁피해 현황에서 국군포로를 사상자 및 실종자에 함께 묶어 인적피해에 포함하고 있어, 포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중국에서 1990년에 발행한 항미원조전사에서 중국이 참전한 50년 10월 25일부터는 구체적으로 포로수를 밝히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도 자국 군대의 작전계획에 따른 기간별로 포로획득 수를 제시하고 있어, 자료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이를 토대로 정확한 포로의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계속되는 3여년 동안에 피·아 작전의 추세와 성격에 따라 포로 발생정도가 달라졌으며, 주로 큰 후퇴기에 피·아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각종 통계로 알 수가 있다.

<표 1> 한국전쟁 단계별 구분 (1)

단계	국군 및 유엔군 진출선	기간
1. 북한군 남침기	38도선→함안-왜관-포항	1950.6.25~50.9.15
2. 유엔군 반격 및 북진기	낙동강선→정거동-초산-혜산 진-청진	1950.9.16~50.10.25
3. 중공군 침공기	청진→평양-서울-평택-삼척	1950.10.26~51.3. 1
4. 유엔군 재반격기	횡성→서울-춘천-인제-양구	1951. 3. 2~51.6.23
5. 교착전기	38도선→판문점-철원-남강	1951. 6.23~53.5월 말
6. 종전기	38도선→판문점-철원-남강	1953. 6월 ~53.7.27

1). 북한 남침기(1950.6.25~1950.9.15)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인 남침을 개시하여 보름이 안되는 50년 7월 7일 북한군이 청주를 점령할 때까지는 국군은 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퇴각만 하였다.

국군은 7월 13일 국군 보병 제6사단 2연대가 문경 북방 이화령에서 인민군 1사단의 침공을 3일간 저지하면서부터 방어선이 형성되고, 7월 중에는 치열한 전투가 발발하게 된다. 이 시기에 대전전투, 영덕전투, 화령장전투, 함창북방의 영강전투, 안동전투, 의성전투, 마산전투등과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라 꼽히는 경북 왜관전투와 대부동전투가 있었다.

국군은 적의 침공을 3~10일간 저지하지만,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8월 5일 경북왜관, 8월 8일 경북포항을 적에게 내어주고 만다. 이때까지는 주로 한국군이 전선을 담당하였는데 이과정에서 국군부대에는 많은 수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이 9월 2일 경북 영천을 탈환할 때 까지 전쟁초창기 두 달간은 국군포로가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남침기에 국군포로가 다수 발생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관련 자료도 없어 이당시에 발생한 포로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이기간에 몇 명의 국군포로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한국전쟁의 전체 포로의 수를 밝히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

미군이 최초로 적과 전투를 벌인 것은 7월 5일로 이날 미군이 적의 포로가 되기도 했다.(2)

이때 포로가 된 국군의 대부분은 인민군에 편입되어 다시 전투에 투입되어 유엔군 및 국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는 유엔군측에 포로로 잡히거나 인민군을 탈출하여 다시 국군에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1). 「한국전쟁피해통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p.16에서는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 제2단계 유엔군반격 및 북진기, 제3단계 중공군 침공 및 유엔군 재반격기, 제4단계 교착전기로 구분한 것을 본고에서는 전쟁상황별 포로발생 추이를 파악하고자 6단계로 재구성하였음. 따라서 단계별 기간이 전시상황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기간이 1~2개월 정도 있을 수 있음.

국군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켜 전장에 투입한 사실은 공산군 포로 13만 2천명 중 11% 정도가 남한출신이라는 당시 발표로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기간에 국군은 불과 1천명 정도의 인민군포로를 획득하고 있었다.

2). 유엔군반격 및 북진기(1950.9.16~50.10.25)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총반격을 개시해서 채 두달이 안되는 1950년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7연대 1중대가 압록강 초산에 도달하고, 미 제10군단 예하 제 1해병사단이 원산까지 상륙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한·만 국경선까지 진격하였다. 이 당시 인민군의 저항이 너무나 무력하여 맥아더 유엔군사령관등 유엔측은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과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등 우리 국민들도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시기였다.

1950년 9월전 까지는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던 북한군측 포로는 약 1천여명에 불과 했지만, 이기간에는 무려 10만명이 넘는 북한군이 아측의 포로가 되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군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퇴각했던가를 짐작 가능케 한다.(3) 따라서 한국전쟁중 북한군 포로의 대부분은 이 두달중에 포로가 되었고, 짧은 기간에 많은 포로를 획득하게 된 것이 그후 포로 수용 문제 및 남북간의 포로교환협상에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에 이기간에 국군 및 유엔군의 포로발생은 극히 적었다.

3). 중공군 침공기(1950.10.26~51.3.1)

인민군의 저항이 무기력하자 국군과 유엔군의 선봉부대는 전과를 다투듯 적진 깊숙히 까지 진격하였다. 중공군이 한만 국경지대로 이동한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유엔군총사령부나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중공군과 10월 25일 운산전투에서 교전을 시작으로, 11월 15일 인민군·중공군이 총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북한 깊숙히 진격한

(2). 「한국전쟁사」 제2권(개정판). 1979. P.61

(3).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40.

(4). 「한국전쟁사」 제5권. 전사편찬위원회. 1972. P.278.

유엔군의 선봉부대들은 대거 중공군의 포위망에 말려 들면서 부대의 연대, 대대등 제대단위가 와해되어 아군은 포로가 되거나 뿔뿔히 흩어졌다.

결국 유엔군측은 51년 1월 4일 후퇴를 하면서 김포, 강화, 인천, 수원, 양평, 여주, 홍천, 횡성, 원주를 공산군측에 내어 주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군과 국군이 횡성지구를 탈환할 때 까지 약 4개월 동안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국군은 물론 많은 미군들도 북한군 및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4) 특히 51년 2월 횡성지구 전투에서만 미군과 한국군 1만 2천명이 사망하고 7,800여명이 포로가 되었다.(5)

이 기간에 잡힌 국군포로는 (중공군 병력 증원으로) 후방 전투부대에 편성되거나 철도, 비용장 복구작업을 주로하는 건설부대에 편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4). 유엔군 재반격기(1951.3.2~1951.6.23)

국군이 1951년 3월 2일 횡성을 탈환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의 재반격이 시작되어 한국전쟁중 격전기로 볼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유엔군은 4월 3일 38도선 전역의 북진을 명령하게 된다.

사창리전투, 병커고지전투, 현리전투, 용문산전투, 도솔산전투, 피의능선 전투, 편치볼전투등에서 일전일퇴의 격전이 벌어지면서 양측 모두 연대급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되지만, 포로는 비교적 적게 발생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잡힌 포로는 후방으로 후송되어 전투지원부대에 편입되거나 군사시설등 복구작업에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5). 교착전기(1951.6.23~1953.5)

이기간은 고양대전투, 저격능선전투등이 있었지만, 휴전협정 진행상황이나 전선의 국지적 사정에 따라 전투가 발생하는 시기로 보아진다. 양측이 어느정도 전선이 공고화되면서 국지적으로 전투가 발생하였으므로 포로 발생은 적은 시기였으며, 양측이 포로송환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여 53

(5).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1991. P.367.

년 4월 20일부터 최초로 상병포로를 교환하였다.

이시기는 주로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대부분은 전쟁복구에 동원되고 일부는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종전기(1953.6~1953.7.27)

53년 6월의 M-1 고지전투, 7월의 금성지구전투등 국군이 全戰線에서 반격전을 전개하고, 중공군 및 북한군은 전방 40km 전면에서 총공격을 개시하는 등 종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는 시기로 최대 격전기였다.

중국의 항미원조전사에 “한국전쟁 3년간, 주식·부식·탄약 및 유류등 주요물자의 보급량은 약 300만톤에 달했으며, 단 한차례의 금성지역에서만 하더라도 3만 4천여톤에 달했다”고 해서 이 당시 금성지구전투가 격전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기간에는 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하는데, 이때 대부분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국군포로 장무환, 양순용 씨 두사람 모두 휴전을 불과 보름을 앞둔 7월 13일, 같은 날 금성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

2. 포로 실태

유엔군측은 한국전쟁기간중 포로명단을 수시로 국제적십자사에 보고를 했고, 정전협정이 조인된 53년 7월 27일까지 국제적십자사에 집계된 공산군포로는 132,465명 이었다. 휴전회담에서 양측이 포로명단을 공개할 때도 국제적십자사에 보고한 것과 같은 숫자를 내놓았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유엔군측 포로가 110명이라고 하다가 51년 12월 18일에는 11,556명의 명단을 국제적십자사 본부에 보고한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포로를 획득·관리한 북한이 그 현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포로의 숫자에 대해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본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군포로의 숫자를 밝혀 보고자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어 나름대로 포로의 수를 산출해 보았다.

1). 유엔군측 주장

우선 유엔군은 1951년 12월 말까지 국군실종자가 8만8천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한국전쟁 전기간 한국군의 실종자를 약 10만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2). 인민군

북한은 50년 12월 30일 평양방송에서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제1차 1·2 단계 작전종료 종합전과를 발표하면서 “개전 6개월 동안에 남조선 국방군 6만 5천명과 미군 1만여명을 생포 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일년후 51년 12월 18일 휴전회담에서 양측이 포로명단을 교환할 때 11,556명의 유엔군 포로중 7,142명의 한국군의 포로명단을 제시하였다가, 12월 23일 유엔군의 추궁에 못이겨 한국군포로 57,800여명을 북한의 후방 군대조직에 편입시킨 사실을 시인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6개월동안에 38,500명, 1950년 12월 26일부터 1951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에 26,865명의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측 포로를 포획했다고 공산군측 사령부가 발표한 바 있다.

3). 중공군

중공군은 50년 10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한국군 37,815명을 포로로 획득하고 355,620명을 살상했다고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에서 밝히고 있다. 중국의 公刊史인 이 자료에 따르면 작전기간별로 포로와 살상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중 포로의 수는 신빙성이 높다.

살상자 수는 전쟁중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과장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만(중국이 지원군 입장이고)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송환해야 하므로 종전후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6) 유병화, “북한어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최성철(편),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 개선운동본부, 1995, p.353.

<표2>에서 보듯이 50년 10월 25일부터 51년 6월 10일 제5차 전역까지 총 79,932명의 국군이 포로·투항 또는 살상되었다. 이중 36.6%인 29,278명이 포로로 붙잡혀 개전초기에 포로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51년 6월 11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2년간은 313,503명이 중공군에 포로·투항 또는 살상되었지만 2.7%인 불과 8,537명만이 포로 또는 투항을 하여, 전선이 교착화되면서 부터는 포로보다는 살상자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수 있다.

<표 2> 중공군의 포로획득추이 (단위 : 명)

운동전시기	작전별 구분	한국군	유엔군	계	살상(한국군)
제1차 전역 (50.10.25~50.11.5)	4,741	527	5,268	7,584	
제2차 전역 (50.11.25~50.12.24)	5,568	3,523	9,091	5,962	
제3차 전역 (50.12.31~51. 1. 8)	5,967	367	6,334	4,593	
제4차 전역 (51. 1.25~51. 4.21)	7,769	1,216	8,985	8,861	
제5차 전역 (51. 4.22~51. 6.10)	5,233	2,073	7,306	23,654	
소 계	29,278	7,706	36,984	50,654	
진지전시기	51년 하계방어작전 기간 (51.6.11~11.30)	652	334	986	51,603
	52년 춘계진지 공고기간 (51.12.1~52.3.31)	834	124	958	40,032
	진술반격과 상감령방어작전 (52.9.1~11.30)	919	160	1,079	67,076
	53년봄 대상륙작전준비기간 (52.12.1~53.4.30)	555	134	689	28,393
	53년 하계 반격작전 기간 (53.5.1~7.27)	5,577	250	5,827	117,863
	소 계	8,537	1,002	9,539	304,966
	합 계	37,815	8,708	46,523	355,620

(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 1990년, p 392~394를 재구성한 것임. 투항한 숫자를 포로에 포함하였음.

따라서 중공군에 의해 포로·투항 또는 살상된 국군은 총 393,435명이고 이중 9.6%인 37,815명이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항미원조전사>에는 중공군이 국군을 섬멸한 수를 통계로 내면서, 동 기간에 인민군이 국군을 섬멸한 수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운동전 시기에는 48,246명, 진지전 시기에는 190,731명, 총 238,977명의 국군을 섬멸했다고 되어 있다.

단순히 이 자료로만 산출하더라도 238,977명의 9.6%인 22,941명의 포로

가 발생했다는 것이 된다. 역시 50년 10월 25일 이전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전초기 중공군에 의해 36.6%의 국군포로가 발생한 비율을 감안하면, 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까지의 북한 남침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포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우리측 자료

우리측의 자료 또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표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986년 발행한 「한국전쟁, 요약」에서 제시한 82,318명과, 지난해 국립묘지 위폐봉안관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그간 집계한 시신 미수집 및 전사 미등록(미확인 전사 및 실종)자를 102,384명으로 최종 확인한 바 있다.

즉 이들이 살아 있으면 포로의 신분인 사람들인데, 이중 육군은 장군 1명과 장교 2,924명, 사병 92,213명이고 해군은 장교 49명, 사병 1,173명이며 공군은 장교 4명, 사병 68명이었다. 또한 종군자 및 군무원이 3,672명이며, 경찰간부 352명과 비간부 1,578명, 경찰애청원 267명이었다. 학생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제1학도의용군 8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가 우리측의 자료중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요약」에서는 실종 및 포로가 된 국군을 82,318명으로 추산했다.

<표 3> 한국군 및 유엔군 피해

(단위 : 명)

구 분	전 사	부 상	실종 및 포로	합 계
합 계	95,800	294,280	89,262	479,342
한 국 군	58,809	178,632	82,318	319,759
유 엔 군	36,991	115,648	6,944	159,583
(미 국)	(33,629)	(103,284)	(5,178)	(142,091)

<출처> 「한국전쟁, 요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p.358.

()는 미군의 피해로 유엔군 피해에 포함되어 있음.

5). 포로 실태

그동안 알려진 유엔군, 북한, 중국, 우리측의 자료를 토대하여 기간별로 포로의 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 4> 기간별 포로발생 추이 (단위 : 명)

	50.6.25	50.12.25	50.12.30	51.3.25	
북한자료①전쟁발발		38,500		26,865	
북한자료②			65,000		
중국자료(50.10.25일부터)	10,309	(12.25과 동일)		20,455	
유엔주장			88,000		
	51.12.18	52.11.30	53.7.27(휴전)	합 계	
북한자료①	7,142			65,360	
북한자료②	7,142			65,000	
중국자료	919	6,132		37,815	
유엔주장	10만명	10만명 추산	10만명 추산		
한국자료①(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82,328	
한국자료②(국립현충원, 한국전쟁 실종자 및 미확인 전사처리자)			102,384		

(1). 북한의 주장에 따른 포로의 수

① 최소치

북한주장 ①에 따르면 1951년 3월 25일까지 포로의 수는 65,365명이고, 동기간에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의 수는 30,764명이다. 중공군은 포로를 잡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북한군에게 인계했으므로 합산하면 중복 산출된다. 따라서 51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중국이 주장하는 전체포로 37,815명 중 30,706명을 뺀 7,109명만을 65,000명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면 72,041명이 포로라는 셈이다. 이는 현재 있는 자료로만 산출한 숫자이며, 51년 4월 이후부터 53년 7월 휴전될 때까지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국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② 최대치

북한주장 ②에 따라 산출해 보면, 1950년 12월 30일까지 포로는 65,000명이고 동기간중에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의 수는 10,309명이다.

따라서 65,000명에 10,309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7,815명에서 10,309를

뺀 27,506명을 65,000명과 더해야 한다. 따라서 약 92,506명이 국군포로라는 계산이 된다. 이 수치 또한 51년부터 53년까지 2년간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국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2년여 동안의 포로수를 밝히지 않았고, 65,000명의 포로를 붙잡았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북한과 중국의 자료를 근거해서 산출한 포로의 수는 최소 72,041명에서 최대 약 92,506명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포로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2년간을 합치면,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2). 중공군 자료에 따른 포로의 수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중공군에 의해 작성된 통계가 유일하다. <표 3>에서 보듯이 50년 10월 25일부터 51년 6월 10일 제5차전역까지 총 79,932명의 국군이 포로·투항 또는 살상되었다. 이중 36.6%인 29,278명이 포로로 붙잡혀 개전초기에 포로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1년 6월 11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2년간은 313,503명이 중공군에 포로·투항 또는 살상되었지만 2.7%인 8,537명만이 포로 또는 투항을 하여, 전선이 교착화되면서 부터 포로보다는 살상자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공군에 의해 포로·투항 또는 살상된 국군은 총 393,435명이고 이중 9.6%인 37,815명이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항미원조전사」에는 중공군이 국군을 섬멸한 수를 통계로 내면서, 同기간에 인민군이 국군을 섬멸한 수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운동전 시기에는 48,246명, 진지전 시기에는 190,731명, 총 238,977명의 국군을 섬멸했다고 되어 있다.

전술한 국군포로 발생비율을 단순히 이자료에 적용하더라도 운동전시기에는 48,246명의 36.6%인 17,658명이, 진지전시기에는 190,731명의 2.7%인 5,149명의 포로가 발생했다는 것이 된다.

결국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37,815명과 포로발생 비율에서 추정한 산출치 22,807명을 합하면 약 60,622명이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역시 50년 10월 25일 이전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전초기 중공군에 의해 36.6%의 국군포로가 발생한 비율을 감안하면, 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까지의 북한 남침기에는 다수의 포로가 발생했고, 결국 한국전쟁 전 기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포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3). 추정 포로의 수

<표 5>

북한억류 포로의 수

(단위 : 명)

북한군			중국군		
기간	포로의 수	비고	기간	포로의 수	비고
50.6.25~51.3.25	65,000	(1)	50.10.25~51.6.10	29,278	
51.3.26~51.6.10	6,786	(2)	51.6.11~53.7.27	8,537	
51.6.11~53.7.27	5,150	(3)			
계	76,936		계	37,815	(4)
합계	114,751				
포로송환	8,333	(5)			
반공포로석방	14,520	(6)			
송환거부포로	335	(7)			
시신교환	3,000				
북한억류포로수	88,563				

위 표에서 (1)에서 6만 5천명은 1950년 12월 30일 평양방송 보도와 1951년 3월 25일까지 북한이 주장한 것 둘중에서 포로의 수를 적게 산출해 보고자 51년의 자료를 인정하였다.

(3)은 동기간에 중국은 유엔군 313,503명을 섬멸했고, 이중 8,537(2.7%) 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다. 같은 기간에 북한은 유엔군 190,731명을 섬멸했는데 중국과 같이 국군포로 발생비율을 2.7%로 적용하여 5,150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산출했다.

(2)의 기간에 대한 포로의 수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먼저 동기간에 중국군에 섬멸당한 유엔군은 79,932명이고 이중 29,278(36.6%)가 포로가 되었다. (1)에서 6만 5천명을 포로로 발표한 것이 3월 25일이고 (3)에서 51년 6월 11일이후 부터 포로를 산출했다. <표 2>에서는 51년 4월 22일부터 51년 6월 10일까지의 포로 수를 5,233명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51년 3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포로의 수만 산출하면 된다.

동기간에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은 7,769명이다. 이를 대강 3개월로 나누면 2,589명이 된다. 통상 중국이 섬멸한 총수의 60%정도가 인민군이 유엔군을 섬멸한 비율로 통계되고 있다.

따라서 2,589명에 60%인 약 1,553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추정했다. 즉 51년 3월 26일부터 51년 6월 10일까지의 국군포로의 수는 1,553명에 5,233명을 더한 약 6,786명이 동기간에 포로가 되었다고 산출 했고,

(4)는 중공군이 참전이후 종전때까지 불잡은 국군포로의 전체숫자이다. 따라서 <표5>와 같이 한국전쟁에서 총 11만 4천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다고 추산된다.

(5)는 남북간 교환한 전체 포로의 숫자이고 (6)은 공산군측 포로 총13만 2천

여명중 국군출신 약 11%를 제외 한 수치이고, (7)은 귀환을 거부했던 국군포로의 숫자이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휴전당시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는 약 8만 8천여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요약」에서 추정한 수치와 같은데, 이는 여러자료중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포로협상 및 처리

1). 포로협상 경과 및 국제관계

한국전쟁 중 포로의 처리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51년 7월 10일 최초로 개최된 휴전회담에서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의 제 4가지중 쌍방이 가장 심각하게 격돌한 문제가 바로 의제 제 4항 ‘포로에 관한 협의’ 사항이었다. 이리하여 휴전협상에서 포로문제는 53년 4월 11일 상병포로 교환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약 2년간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 발단은 52년 4월 초 유엔군측이 억류중인 공산군 포로 14만명 중 약 5만명(북한군 34,900명, 중공군 14,704명)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공산군측은 억류된 포로 전원의 강제송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유엔군측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포로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53년 4월 20일부터 한국전쟁 발발이후 처음으로 상병포로를 교환하였고, 6월 8일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이에따라 8월 5일부터 9월 6일간에 송환을 희망하는 쌍방의 포로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보호와 관리하에 심사를 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54년 1월 20일에 유엔군측이 반공포로를 인수하고, 동년 1월 28일에는 공산군측이 친공포로를 인수하였다. 그후 양측은 1차례 시신교환을 하고 사실상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문제는 종결되었다..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우리정부의 의사를 배제한 채, 포로협상을 진행하여 ‘포로교환 협정’을 조인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열흘 후인 53년 6월 18일 미군의 감독하에 있던 반공포로 2만 7천명을 은밀히 탈출시켜 버렸다.

한국전쟁에서 포로에 대한 처리는 그전의 어떤 전쟁에서의 포로의 처리와는 다른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협상과정에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7)

첫째. 한국전쟁에서의 포로교환문제는 다른 어떤 쟁점보다도 휴전협상의 계속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포로문제를 타개하는데 거의 2년의 시일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협상 당사자의 견해차가 컸다.

셋째. 협상의 내용도 매회 이질적인 것이었다.

넷째. 공산권 포로중에서는 대대적인 송환거부포로가 발생하였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난 민족간의 전쟁에서 세계전사에 유례가 없는 수만명의 미송환포로가 발생된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포로가 미송환되었던 것은 당시 미국과 참전유엔군국, 이승만 정부 입장이 각기 달랐던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들의 당시 입장을 분석해 보았다.

① 1년여 남짓하게 진행되고는 사실상 소강국면을 맞은 한국전쟁을 미국 및 참전국들은 초기에 종결하고자 했다. 이들 국가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육상에서도 교전을 치러게 되었고, 많은 인명피해와 포로가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정전협상 과정에서 수만명의 국군포로들의 교환보다는 수천 명의 미군포로들에 주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② 북한도 전쟁을 1년정도 치르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서 지속적인 전쟁수행 및 전후복구 사업의 필요성은 국군포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우를 하고 교환하지 못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국군포로를 ‘해방전사’라며 주장하며 전쟁포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 같은 증거는 북한군 및 중공군의 자료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50년 7월 13일 북한 외상 박현영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전문을 발송하였지만, 51년 12월 18일 정작 제네바협약에 의거 양측이 포로의 수를 상호 통보할 때는 입장을 바꿔 국군포로를 7,412명으로 축소 발표했다.

이는 포로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이미 북한은 한국군포로를

(7) 「한국전쟁,요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P 356~357 참조.

귀환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는, 북한이 포로가 7,142명이라고 밝히자 유엔군측은 이에 대해 강도 높게 항의를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공산군측 수석대표인 이상조는 “포로로 잡은 남조선 군대는 그동안 전선에서 다시는 미군과 남조선에 가담하여 전쟁에 참가하지 말도록 교양을 주어 자유석방해 버렸다. 이런 약속을 거부한 자들만 포로수용소에 보호했다”고 억지를 써다가 유엔군의 추궁에 몰려 결국은 국군포로 57,000여명을 인민군에 편입시킨 사실을 시인 한 바가 있다. 이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전후복구를 위해 포로를 이용하고자 했던 북측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공산군측이 장기전에 대비했다는 증거는 중국의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항미원조전사」에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건설하여, 전쟁중에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아군의 현대적 전쟁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고, “전쟁중에도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윤번식으로 전투에 참전케하며 兵團 이상의 지휘간부와 모든 고급 간부를 계획적으로 전선에 보내 견학시키거나 보직케 하여 지원군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구작전에 필요한 병력·간부의 보충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고, 53년 5월 8일 북경방송이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의 8개항목을 수락하면 휴전이 성립될 것”이라고 보도할 때 까지는 북한도 휴전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③ 53년 4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휴전에는 반대했고, 7월 휴전 직전까지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소극적 휴전협상의 참여가 국군포로를 양산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53년 정전협정 체결후에도 포로귀환 문제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데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53년 9월 9일부터 64년 12월 14일까지 아홉차례 정전위에서 유엔측은 세차례 걸쳐 해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줄곧 반공포로 2만7천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시킨 것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자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물고 늘어지자 유엔군측은 자포자기해 버렸다.

④ 그후 우리 정부는 포로문제가 북한의 대남공세의 소재로 쓰일까 우

려하여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포로문제에 관한 언급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자료축적에 실패 했고, 관련 법률적,제도적 장치나 인적,물적 자원이 구비되지 못하여 송환을 추진하고자 해도 힘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포로가족들이 실종자 소재파악 및 포로송환에 대한 요구가 미약 했다는 것이 오늘날 수만명의 미송환 포로를 발생케 했고, 일가친척 한명 없는 북녘땅에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

2). 포로의 처리

북한에는 최소한 29개소, 중국내에 18개소의 상설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1951년 12월 18일 공산군측이 제시한 11,556명의 포로목록에는 북한의 11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포로들만 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 18개와 중국 소재 포로수용소 수용인들은 누락되어 있었다. 최근 수천명이 구소련으로 강제이송되었다고 밝혀져 이들도 결국 누락된 셈이다.

한국전쟁중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는 인민군에 편입되거나, 건설부대에 투입되어 각종 생산활동 및 전후복구사업에 동원되거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휴전후 송환된 포로의 대부분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포로이고 인민군과 건설부대에 편입된 국군포로는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

(1). 상병포로의 처리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및 공산군 쌍방의 합의하에 포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53년 4월 20일 傷病捕虜의 교환을 시작으로, 휴전을 전후하여 총 4회에 걸쳐 포로를 처리하고 1차례 시신을 교환한 것이 전부였다.

1949년 제네바협정 제109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유엔군·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연락장교 수석대표는 1953년 4월 11일 「病傷捕虜交換에 관한 協定」에 동의함에 따라 傷病捕虜 교환은 총 10회에 걸쳐 유엔군측은 684명, 공산군측은 6,670명의 포로를 인수하였다.(8)

한국군 471명을 포함한 송환내역은 <표6>과 같다.

<표 6> 상병포로 송환내역

유엔군 측	인원(명)	공산군 측	인원(명)
인민군	5,194	한국군	471
중공군	1,030	미군	149
민간역류자	446	영국군	32
기타			32
계	6,670	계	684

<출처> 「한국전쟁 휴전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P.262

(2). 반공포로의 석방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상이 열리기 전부터 “이나라를 분단하는 조건이 포함된 소위 평화안이라는 것을 수락할 수 없다”고 했고, 1953년 4월 11일에는 “휴전을 반대하며,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며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그러나 1953년에 접어 들자 휴전회담은 한국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공산군측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중공군 투입후 전선이 더욱 공고화되었고, 소련까지도 휴전협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려는 상황에서, 남북 쌍방이 감정·이념대립으로 2년 가까이 전쟁을 끌어오던 것을 종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5월 12일 자신을 방문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휴전을 반대하는 견해는 변함이 없으며, 포로관리차 인도군이 한국내에 입국한다면 내 명령으로 송환거부 포로들을 석방하겠다” 하여 송환거부 포로들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와같이 한·미간에 기본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던 가운데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슨 2세와,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은 53년 6월 8일 판문점에서 「포로교환협정」에 조인하였다.

당시 포로수용소의 관리와 권한이 한국군의 관할이 아니라 미군의 지휘관 책임하에 병참사령부(KCOMZ) 소관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포로를 석방

(8). 「국방사연표」(1945~1990). 국방군사연구소, 1994. P. 135.

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엔참전국의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약 가운데 ‘포로교환은 의무적이 아니다.’라는 것과 ‘전쟁포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는 규정을 찾아내고는 이를 근거로 비밀리에 석방계획을 지시하였고, 1953년 6월 18일 포로수용소를 경비하고 있던 한국군경비대의 북인하에 논산수용소등 8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를 탈출·석방하는데 성공하였다.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 7> 반공포로 수용 및 석방현황(53.7.2 현재)

(단위: 명)

포로수용소	수용포로 총인원	석방된 포로	사망	잔류수용 인원			
				부상	체포	미탈출	계
부산지구 거제리제2수용소	3,065	392	1		116	2,556	2,672
부산지구 가야리제9수용소	4,027	3,930				97	97
광주 제5수용소	10,610	10,432	5	8		165	173
논산 제6수용소	11,038	8,024	2	2	336	2,674	3,012
마산 제7수용소	3,825	2,936	3	11	144	731	886
영천 제3수용소	1,171	904	1		116	150	266
부평 제10수용소	1,486	538	47	60	39	802	901
대구 제4수용소	476	232	2		180	61	241
계	35,698	27,388	61	81	931	7,236	8,248

<출처> 「6.25사변후방전사」. 육군본부, 1956, P. 137

이들은 남한출신과 국군출신으로 인민군에 편입된 후, 유엔군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로써 북측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6월 18일 사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도주’ 또는 ‘탈출’ 아니라 ‘석방’을 인정함으로써 유엔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김일성과 중국인민의용군 총사령관 팽덕회가 클라크 장군에게 보내온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를 강제역류하려는 목적을 달성키 위해 포로를 한국군에 강모할 용의가 있다고 공공연히 발표하여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불과 10일전에 맺은 「포로송환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였다.”며, “휴전협정에 이승만 정부를 포함할 것인가, 한국측이 휴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어떠한 보증을 할 것인가”를 물어 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9)

- .첫째, 반공포로를 공산진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이념적인 측면
- 둘째, 외교적 주도권 장악
- 셋째, 반공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
- 넷째, 휴전협정에 전쟁당사국인 한국의 주장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 는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
- 다섯째, 반공포로들의 열망과 그들이 제출한 직·간접적인 탄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8> 포로의 구분에 의한 인원현황

(단위 : 명)

포로의 구분		인원수
북한군	친공포로	67,248
	반공포로	33,278
중공군	친공포로	5,809
	반공포로	14,314
입원환자(북한, 중공군)		2,638
공산민간역류자		9,109 (10)
계		132,396

<출처>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76.

(3). 송환희망포로의 처리

휴전협정 및 동 협정의 발효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 포로교환협정 중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따라 휴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 을 행사하지 않은 모든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1953년 9월 6일에 송환희망 포로를 상호교환 하였다. (11)

이 때 교환된 포로수는 <표 9>과 같다.

(9). 「한국전쟁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195.

(10). 유엔군 사령부는 한때 약 38,000명의 민간인 억류자들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대부분 의 반공 민간인 억류자들은 석방했으며, 수용중인 민간인 억류자들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 망하는 사람들이었다.

(11). 이 협정은 휴전협정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음.

<표 9> 휴전협정에 따른 포로의 상호교환

(단위 : 명)

구 분	한국군 및 유엔군				공 산 군		
	국 별	한 국	미 군	기 타	계	북 한	중 국
인원수	7,862	3,597	1,314	12,773	70,183	5,640	75,823

<출처> 「한국전쟁 휴전사」(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P.262.

(4).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

포로중에는 전쟁이 끝나도 북한이나 중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 힌 송환거부 포로들은 1953년 6월 8일 조인된 포로교환협정 「중립국송환위 원회 직권의 범위」와 7월 27일 조인된 「휴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 정」에 따라 중립국송환위원회 보호 및 관리하에서 자국에서 파견된 사람들 에 의해 송환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심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은 1953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송환거부 반공 포로 22,604명을, 공산군측도 다음날인 9월 24일 친공 유엔포로 359명을 중립 국송환위원회 위원장인 인도관리군에 인도했다. 그로부터 120일 동안 송환 거부포로들은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보호 및 관리하에서 90일 동안 심사를 받고, 30일은 송환거부에 따른 정치회담을 열었다.

그래서 54년 1월 20일에 유엔군은 반공포로를 21,839명을 인수하였고, 1월 28일에는 공산군측은 북한·중공 적십자사 명의로 친공포로 347명을 인수하였다.(12) 그 처리결과는 <표10>과 같다.

이로써 포로처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그후 한차례 시신교환을 제외하면 더 이상 포로처리는 없었다.

<표 10> 송환거부 포로 처리 결과

①. 공산군 포로

(단위 : 명)

출 신 구 분	북한군	중공군	계
공산군측으로 귀환	188	440	628
탈출 및 행방불명	11	2	13
인도군 관리중 사망	23	15	38
인도로 이송	74	12	86
유엔군측으로 전향	7,604	14,235	21,839
총 계	7,900	14,704	22,604

②. 한국군 및 유엔군 포로

(단위: 명)

출 신 구 분	한국군	미군	영국군	계
유엔군측으로 귀환	8	2	10	
인도로 이송	2			2
공산군측으로 전향	325	21	1	347
총 계	335	23	1	359

<출처>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254.

(5). 시신교환

1954년 9월 1일부터 전사자 시신 교환을 개시해서, 그 해 10월 11일까지 유엔군측 4,023구, 공산군측이 13,528구를 인수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로처리는 53년 4월부터 53년 6월까지 불과 두달에 걸쳐 상병포로, 정상적 포로, 송환불원 포로, 포로시신 교환이 각각 1차례씩 이루어 졌다. 이는 교전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해 제네바협약에 규정한 포로송환에 대한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포로송환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공산군측이 모양갖추기식 속셈과, 우리정부를 포함한 유엔군측의 협상능력 및 포로송환에 대한 의지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정부 및 유엔군측은 미송환 포로가 수만명에 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53년 9월 23일~24일 사이에 양측이 송환불원 포로를 중립국에 인도하고는, 9월 2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1차 본회담에서 양측은 「포로송환위원회」를 곧 바로 해산해 버렸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에 의해 처리된 포로의 통계는 <표11>과 같다.

<표 11> 상호합의에 의해 처리된 포로 · 시신교환 통계 (단위: 명)

구 분	한국군	유엔군	계	인민군	중공군	계
병상포로 교환	471	213	684	5,640	1,030	6,670
포로송환(교환)	7,862	4,911	12,773	70,183	5,640	75,823
송환불원자 수 (불원자증 복귀자수)	335 (8)	24 (2)	359 (10)	7,900 (188)	14,704 (440)	22,604 (628)
계	8,668	5,148	13,816	110,723	21,374	132,097
시 신 교 환	4,023	4,023		14,227	14,227	
합 계			17,839			146,324

<출처> 「한국전쟁 휴전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P.357. 재구성

(12). 「한국전쟁 요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P.350~351.

4. 미송환포로 및 생존포로

한국전쟁에서 발생된 국군포로 및 실종자가 10만명을 넘는다고 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포로 및 시신교환은 1만 2천여명에 불과하여 8만 8천명 정도가 실종자를 포함하는 미송환 포로라는 추정이 가능해 진다. 미송환 포로가 얼마인지를 현존하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53년 휴전협정문서에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그의 회고록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From the Danube to the Yalu)」에서 “공산군측이 강제억류, 송환하지 않으려는 한국군포로 5만여명과 미군 944명을 포함한 유엔군포로 3,40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24개월 동안 더 싸우고 한국측에 13만명의 사상자를 더 내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공산군측으로부터 그들을 송환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정부의 조속한 정전협정 체결압력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청년 5만명을 송환하지 못한 것이 군인으로서 가슴 아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육군 전사자 자료들에서는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의 숫자를 약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986년 발행한 「한국전쟁 요약」에는 포로가 된 사람을 82,000~8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자료에는 북한에 억류된 8만여명의 포로중 2~3만명의 포로가 전쟁중에 사망했고, 휴전후 지금까지 약 3만명 정도가 사망하였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포로는 대략 2~3만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자료에 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생존포로는 이보다는 적을 것이다.

1997년 서울국립묘지 위폐봉안관에서 시신이 미수집되거나 전사미등록된 전사처리자가 10만 2천 384명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본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접한 각종 자료와 한국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자료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11만 4천명(표5)으로 추산했다.

포로교환시 돌아온 8,333명과 시신교환시 송환된 약 3,000구, 유엔군측이 생포한 공산군측포로 132,000명중 국군출신 11%인 14,000명을 제외하더라도 8만 8천명 이상이 미송환 포로로 억류되었다는 추산이 가능해 진다.

북한은 1956년 인민군 8만명을 제대조치를 실시했다. 북한에 특히 저항하지 않는 포로들은 모두 인민군에 편입되었으므로, 56년의 인민군 8만명의 제대조치는 국군포로 출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포로로 붙잡혀 포로수용소로 이동하면서 죽거나 학살당했고, 인민군에 편입되어 전투중 사망할 수도 있었고, 전후복구사업에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힘든 노동으로 많지 않은 나이에도 다수가 죽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생존 포로의 수가 얼마인지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사병과 의용군의 나이는 대개 20~30세인 것을 감안하면 생존포로의 현재 나이는 대강 65~75세가 된다.

통계청에서 1997년 발행한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1991~1995년에는 남자가 67.7세, 여자는 73.9세이고 1996~2000년에는 남자가 68.7세, 여자는 75.2세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료대로라면 98년 현재 약 50%, 즉 8만 8천명의 절반인 4만 4천명 이상이 생존해 있다는 셈이다.

여기에 혹한 노동과 작업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과 최근 식량난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2만명 정도는 생존해 있다는 추산을 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1993년 7월 15일부터 1994년 10월 30일 동안 육해공군으로 부터 확인된 41,954명 실종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이중 유가족 신고와 민원에 의해 관련자료를 토대로 22,562명을 전사자로, 유가족신고 및 민원등 제보가 없는 자 17,020명을 실종자로, 실종자 명부와 병적부 대조시 명단확인이 곤란한 자 2,372명을 미확인으로 처리했다.

이 자료는 유족의 신고와 증언등을 토대로 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포로에 대한 자료가 망실되었거나 부재했다는 점에서, 발생된 포로 수와 미송환포로의 수를 밝히는데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IV. 공산군측의 포로대우

1. 북한의 포로정책

“북한군측은 한국군 및 유엔군 포로를 취급하면서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 분명했다. 그들은 전쟁포로를 어떻게 처리·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전쟁이 시작된 시기로 부터 1951년 초까지는 포로의 수집 및 억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수단이 갖추어 지지 않았음이 확실했다.”(13)

하지만 곧 끝나리라 짐작되었던 전쟁이 장기화 되고, 북한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전쟁중반 이후에는 포로처리에 대한 지침등 그들 나름의 포로의 정책을 수립하였던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와 귀순자 및 생환 국군포로의 증언에 따라 전쟁기간과 휴전협정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1). 전쟁 기간중

51년 12월 18일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은 총 11,556명의 포로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미군이 3,198명이고 기타 유엔군이 1,216명, 한국군이 7,142명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수용, 보호하고 있는 남조선 국방군 포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이 명단에 들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엔측 수석대표 리비 해군 소장은 50년 12월 30일 북한의 평양방송에서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제1차 1·2단계 작전종료 종합전과를 발표하면서 “개전 6개월 동안에 남조선 국방군 6만5천명을 생포 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당신네들이 1년전에 전과로 발표한 한국군 포로 6만5천명과 이번에 명단으로 내놓은 7천1백42명 사이에는 5만7천8백여명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 수석대표인 이상조는 “포로로 잡은 남조선 군대는 그동안 전선에서 다시는 미군과 남조선에 가담하여 전쟁에 참가하지 말도록

(13).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41.)

교양을 주어 자유석방해 버렸다. 이런 약속을 거부한 자들만 포로수용소에 보호했다”고 억지를 썼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로 몇일간 설전을 하다가 12월 23일 휴전회담에서 “지원자들만 우리 대열에 참가시키고 있다”고 실토를 하면서, 한국군포로 5만 7천 8백여명을 북한의 후방 군사조직에 편입시킨 사실을 시인 했다.

북한은 조국의 해방전쟁에 참가한 해방전사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쟁초기에는 전장에 배치하고 중공군이 참전한 50년 10월 말부터는 후방 군사조직에 편입시켜 군수물자 조달, 전쟁피해 복구작업, 생산활동에 동원시켰다.

이들이 인민군에 재입대하는 과정은 미군 포병중위의 증언에서 짐작케 하고 있다. “한국군 포로들은 조선인민에게 반역한 죄과를 받기 위하여 북한 보안경찰에 인계되거나, 아니면 투항후 북한 인민군에 지원하여 미국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사업에 동참할 것” 중 선택하도록 강권했다고 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포로들은 인민군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 한다.(14)

북한의 포로정책은 장개석과 모택동의 중국전쟁에서 모택동 군대가 장개석 군대에 행한 포로정책과 동일하며, 북한군은 이러한 모택동 군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모택동은 장개석의 국부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국부군의 포로를 포로라 부르지 않고 ‘해방동지’로 대우했다. 즉 모택동 군대의 논리는 ‘인민의 착취 조직인 장개석의 국부군에 끌려갔던 것이므로, 포로가 되면서부터는 그들로부터 해방된 동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며 노자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로부터 석방된 장개석의 국부군 포로는 감격하여 모택동에게 충성하는 경우가 생겼다.(14)

인민군도 국군포로를 포로라 부르지 않고, 장교를 ‘해방군관’, 사병을 ‘해방전사’라 불렀던 것은 이와 같은 논리였다.

(14).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정책” 전 조선노동당간부 이정민. 북한 1998년 6월 호 P.45.

또한 중공군이 참전 초기에 일부 국군포로를 석방하고 예우했던 것도, 모택동 중공군의 포로취급의 원형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국군포로에 대한 논리는 중공군의 포로취급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해방전사’라는 미명하에 전쟁초기에는 전투에 참전시키고, 중반에는 정찰부대 및 건설부대에 투입하였고, 휴전후에는 전후 복구 사업에 강제동원시켜 인도적으로 대해야 할 포로를 노동력으로 보았다.

이처럼 포로들을 강제억류하게 된 것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유엔군의 폭격이나 공습으로 황폐화된 북한의 복구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 정전협정후

휴전회담이 체결되고 전쟁이 끝나자 북한은 남한에서 송환된 인민군 귀환포로 10만여명과 5만명 이상의 국군포로를 합쳐 수 많은 건설여단, 각종 건설돌격대를 편성하여 이들을 전후 복구사업에 내몰았다.

북한은 전후 복구공사가 대충 마무리 되었던 1958년, 국군포로와 인민군 귀환포로들로 편성한 ‘건설부대’의 대원들에 대해 사상·성분조사라는 것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본에 따라 거의 대부분을 ‘반혁명 적대계층’, ‘신뢰할 수 없는 동요 계층’으로 재분류하여 산간오지의 벌목장·탄광 등으로 분산 추방해 버렸다. 따라서 이 때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건설부대는 해체되었다.(15)

최근 국방정보본부와 국방군사연구소가 귀순·귀환한 사람들에게 얻은 정보와 청취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2~3차례에 걸쳐 포로출신자들을 통제구역·농촌등으로 추방시키는 재정비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북한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의 포고로 “반국가 파괴, 전복음모, 치안대 가담전력, 간첩임무등에 대한 자수 및 관대 처리 방침”을 발표하고, 극소수 포로에게 노동당 입당, 행정간부로 임용했으며

(15). 「민족정론」, “돌아오지 않은 국군포로의 잊혀진 40년”. 1994.7월호. P.58.

포로 2세들에게 대학추천이나 군대입대를 허용하는 등 통제 일부를 완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군포로 출신자는 탄광, 광산, 제철소, 통제구역 공장, 농촌 등에 거주하며 국가보위부에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당조직과 인민대중의 감시와 통제밑에 두고, 검증하여 완전한 자기사상의 잘못에 대한 인식차원에서 과거사를 진실로 뉘우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믿되, 끊임없이 단련·검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검증에서 자기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피동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린다”는 것이 기본정책사상이다.(16)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은 대내용으로서 국군포로들에 대한 정치공작적 내용을 포함한 군중정책 노선으로 그 내용은 “국군포로들도 과거를 잊고 노동당의 정책을 받아들여 나서면, 당은 그들을 굳게 믿고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부분을 맡길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포로와 이산가족들은 대외선전 및 북한내 결속용으로서 철저히 이용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극소수 포로출신을 당에 임당시키고 행정간부로 임용하며 자녀들에게 대학추천을 허용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행한 조치가 아니라 대외선전 및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의 사례를 남겨 발생할지도 모를 국제여론의 질타를 사전대비 하고자 했을 것이다.

내적으로는 국군포로들과 이산가족을 사상검증 대상이나 북한체제를 반대하여 남으로 도주한 ‘적대계층’으로 간주하여 인민들의 체제옹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북한 인민들에게 “남쪽을 동경하거나 지지하면 국군포로나 이산가족들처럼 된다”는 인식을 전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정책방향이 이와 같이 수립되어 있는 한 북한사회 내에서의 국군포로들의 사회적지위는 이미 한계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그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게 되어있다.

(16).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정책” 전 조선노동당간부 이정민. 북한 1998년 6월 호 P.45.

2. 공산군측의 포로의 관리

1). 전쟁기간별 관리실태

공산군 포로들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적 처우를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억류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에 반해 공산군측의 포로관리 및 대우의 실태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적십자사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모든 중립국의 시찰을 거부하며, 전쟁중에 110명의 포로명단과 휴전회담에서 11,556명의 포로명단을 제출한 것 이외에는 그들이 획득했거나 수용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전쟁초기에는 북한이 단독으로 포로를 관리하였는데, 포로들을 먹이고 채우고 치료하는 수용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포로들은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포로를 관리하는 어떤 기구라고 할만한 것이 없어서 보안대가 포로통제 업무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었다.

포로들은 일시적으로 수용되었다가 강압적인 절차를 통해 대부분을 인민군에 편입시켜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 당시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탈출하여 국군에 재입대하는 포로도 있었다.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상황뿐만 아니라 포로문제에 이르기 까지 전쟁全般에 대해 영향을 주었다.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부터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함께 포로를 관리했으며, 영구적인 수용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시수용소에 포로들을 수용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공산군측은 유엔군측 포로관리가 문제였다.

국군포로는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불린 「인민군최고사령부 후방총국」의 관리하에 ‘포로 노무부대’로 편성되어 파괴된 철도시설 복구, 비행장 건설, 불발폭탄물 제거, 교량·저수지 그리고 도시복구공사, 군부대 진지공사 등 대부분은 건설부대에 동원되었고 일부는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귀순자 이항구씨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국군포로들을 정치·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해 창설된 ‘조선인민군 제22여단’은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군포로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부대를 해체시키고 다시 창설한 철로복구 임무를 주로 했던 ‘인민군 584군부

대' 와 그 산하에 있던 3개여단 그리고 비행장 복구작업을 주로 했던 '인민군 218군부대'의 병력도 모두 국군포로 출신이었다고 한다.

전쟁후반기에는 인민군의 전투원으로 편성되었던 국군들이 공산군 분대장과 소대장을 사살하거나 집단으로 탈출하는 사례가 생겼다. 그래서 포로는 절대 믿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소위 '해방전사'라고 부르며 전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훈련하던 포로부대의 훈련과 전선투입을 중지시키게 되었으며, 전쟁후반에는 무장을 시키지 않고 노동력만 이용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17)

이에따라 전후복구공사나 생산시설에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2). 인민군과 중공군의 포로관리

(1). 인민군

전투중에 붙잡힌 포로를 호송하기 위해 전선 또는 지원부대에서 나온 병력을 이용했는데, 그 인원은 포로 3~4명당 한사람의 비율이었다. 포로는 단체로 모아서 주로 밤에 후방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전방에서 2차 집결지로 갈 때 낮에는 산간 솔밭에서 쉬고, 야간을 이용하여 80~90리씩 행군하였다. 식사로는 옥수수 삶은 것을 한 움큼씩 하루에 두 번 주었는데, 그릇이 없어 손이나 방한모에 받아서 먹었다.

포로호송을 맡은 북한군은 거칠고 잔인했다. 북한의 험한 지세와 불량한 기상 상태에서 행군하는 동안 대열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중상 포로들이 많이 생겼다. 소위 '죽음의 행군'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 호송 북한군인들은 중상포로들을 사살하여 눈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기도 했다.

(2). 중공군

종전후에 송환되어 온 사람들과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 장무환, 양순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포로에 대한 공산군측의 태도는 북한군보다 중공군이

(17) 「민족의 증언」 제3권. 중앙일보사. (을유문화사, 1976), P.218.

(18).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43. 발췌

오히려 나은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중공군은 포로에 대해 모질게 굴지도 않았고, 식사도 그들과 같이 제공했다고 한다.

중공군이 참전 직후에는 일부 포로를 되돌려 보낸 적도 있었다. 중공군이 포로를 석방해준 것은 심리전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포로가 되어도 무기만 빼았고 살려서 돌려보내 준다는 인식을 유엔군측에 심어 줌으로써, 포위가 되었을 때 쉽게 투항하게 하자는 것과 중공군에 대한 적대감을 희석해 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바로 중공군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전쟁 중반부터는 북한군 보다 훨씬 많은 중공군이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기에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되는 수가 많아졌다. 중공군은 붙잡은 포로를 얼마동안 임시포로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다가 모두 북한측에게 인계했다.

다음은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던 양순용씨와 면담을 통한 증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공군은 주로 점령지역의 학교등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포로수용소로 사용하였고, 수용소 주변에는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병력을 배치하여 포로들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회양포로수용소에는 약 300여명의 유엔군 및 국군포로가 중공군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다고 한다.

포로들은 오전 6시경에 기상하여 일조점호를 취한 뒤, 줄을 지어 주변하천으로 이동하여 세면을 하고, 돌아와 아침식사를 했다고 한다. 중공군은 식량이 충분하다고 자주 선전하였고, 식사는 중공군의 사병과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한다. 주간에는 주로 토굴집을 짓거나 작업에 동원되어 노동을 하고 하루 2시간씩은 반드시 사상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중공군은 전방 사단 및 군단급에 포로수집소를 운영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여기에는 통역관이라는 북한장교들이 배치되어 있어 포로들은 주로 이들에 의해서 전쟁상황이나 포로귀환 등에 관한 소식을 듣곤 했다. 또한 정전이 선포되었던 것도 수용소에서 알 수 있었고, 곧 귀환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했다.

53년 8월 초순경 어느날, 포로들을 전원 학교운동장에 집결시키고는 수건 1장과 담배 10갑을 지급하고는 설명없이 트럭에 태워 북쪽으로 이동했다

고 한다.

전방의 임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은 종전후 후방의 수용소 또는 교화소로 이송하였는데 포로수용소 지붕에는 백색 또는 황색으로 PW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정전 직후에는 전쟁복구 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사병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광산에 배치되고 일부가 협동농장으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3). 포로수용소 실태

전장에서 포로가 되면, 적전술부대(포로) → 전방 포로수집소 → 후방 포로수집소 · 임시포로수용소 → 포로수용소 · 교화소의 단계로 보내어져 관리하였다. 단계별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포로수집소

전선에서 붙잡힌 포로는 일단 사단, 군단급 제대단위별 일차 집결지인 전선의 포로수집소에 모아서 일정기간 이들을 관리하였는데, 주로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이들을 수용하였다. 전투에서 중공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한국군은 식사, 일과, 작업등에서 비교적 엄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민군에 인계하기 위해 1차 집결지를 떠날 때부터 포로들의 모진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었다.

포로수집소를 거쳐 북한군에 인계되어 임시수용소에 수용되기 전까지, 포로들은 인민군과 중공군측 어느 편에 포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대우와 생사가 완전히 달라졌다.

포로들은 임시수용소로 이동하기 까지는 대개 수백 Km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기상의 악조건, 부상 및 질병, 그리고 영양실조등으로 수많은 포로가 이과정에서 죽었다. 공산군은 체포된 포로들 중에서 자기발로 걸어서 수용소로 갈 수 없는 포로들을 대부분 현장에서 학살해 버렸다. 부상포로들에 대한 학살이 때로는 집단적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평안북도 운산에서는 전투가 끝난 뒤인 1950년 11월 5일에 약 4백명의 미군 부상포로들을 중공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운산내무서원들은 11월 6~7

일에 내무성 경비대와 협동하여 경기관총으로 학살하고 강변의 모래로 덮어 버렸다고 한다.

(2). 임시수용소

임시포로수용소는 북한이 영구수용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로 전선의 후방에 설치되었고, 조직적인 포로수용 체계의 일부분도 아니었으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임시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임시수용소는 울타리나 담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경비는 동초와 외곽초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점호와 인원수 파악하는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포로의 국적, 계급, 인종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국적은 한국군과 유엔군으로, 신분은 장교 · 선임하사 · 현병 · 정보요원으로 구분하여 분산 수용되었다.

포로들의 통제관리를 위해 분대, 소대, 중대로 나누었지만 포로의 계급에 상응하는 지휘계통에 임명하지는 않았다. 임시수용소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규칙적인 일과는 없었다. 공산군측 장교들이 매일 정치선전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방전사'라고 부르면서 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내무반 생활은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임명해서 급식분배, 수용소의 노역, 별목, 인원차출, 점검, 규율당속 등을 포로들 자체에 맡겼다.(20)

(3). 포로수용소

학교나 관공소 건물을 개조해 작은 방들을 만들어 포로수용소로 사용했으며 수용소내 방을 '병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수용소의 생활은 일일 3교대로 작업을 시키고 하루에 2시간씩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정치학습을 시켰다고 한다.(21)

포로수용소는 주로 탄광주변에 설치되었는데, 탄광운영은 서평양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내무성건설대 '2001부대' 소속이었으며, 포로가 가장 많이

(19). 이기봉 "6.25 전쟁포로 출신 전문가 진단, '북한 달러박스' 미군유해 발굴, 몇구나 가능할까", 신동아, 1996년 8월호, p.377.

(20)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45.

(21). 양순용씨와 98년 11월 5일 면담에서

수용되어 있었던 아오지의 부대명은 ‘1701부대’ 였다고 한다. 국군포로, 민군포로, 반체제 인사, 공무원·군인 등의 범죄자등이 주로 탄광지역에 배치되었고,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하기에 신체가 약한 사람은 농촌으로 보내어 져 협동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 함경북도에만 10개가 넘는 탄광이 있으며 포로들은 여기에 분산, 수용되었다고 한다.

포로는 해방전사라고 부르며, 작업은 수령님 교시라면서 일일 작업량을 달성해야만 쟁내에서 나올수 있었다고 한다.

94년 귀환한 조창호씨는 53~57년 동안에 “아오지 제 1특별수용소에 만도 3백~4백명의 국군포로가 수용되어 있었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다가 대부분이 장티푸스·콜레라·폐결핵등으로 비참하게 죽어갔으며, 자신의 손으로 묻어준 포로만도 1백명이 넘는다”라고 증언했다.

한국군 포로는 화풍, 우시, 천마광산, 벽동, 외규, 만포진, 식주, 북진, 강동, 황주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물론 전쟁 추세에 따라 수용소 규모가 달라지고 폐쇄 또는 신설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장소에 그들의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22)

당시 미국정보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함북 아오지의 특별수용소, 평남강계교화소, 현재 자강도 부근의 화풍광산, 황해북도 송림시 황해제철소, 황해남도 은률광산, 제령광산, 평북 벽동군의 포로수용소, 덕천 수용소, 서홍수용소, 함흥수용소등 29개소의 포로수용소에 주로 수용되었고, 중국내에 18개의 상설수용소가 있었다고 한다.

93년 11월 한국전쟁 당시 포로이송에 관여했던 고간산 북한군 퇴역 중장이 “북한억류 국군포로 가운데 수천명이 비밀리에 구소련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미국방성 내부보고서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간산씨는 “한국군 포로가 대부분 시베리아 벌판이나 일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3~4백개소의 비밀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포로가 집단으로 구소련으로 끌려간 사실이 미국측 문서에 의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결국 국군포로는 북한내 수용소와 중국 및 구소련의 비밀수용소에 분산, 억류되었던 것이다.

(22). 민족의 증언. 제3권, P.198.

(4). 포로의 탈출

공산군에 붙잡힌 포로들이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포로들이 탈출을 시도했던 경우를 과정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전방의 포로수집소에 억류되어 있을 때 둘째, 전방수집소에서 후방으로 이동할 때 셋째,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이송될 때 또는 임시수용소에서 영구수용소로 이송될 때 넷째, 임시 및 영구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등이었다.(23)

그중 탈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체포직후 전방의 포로수집소에 잠시 억류되어 있을 때와 전방포로수집소에서 후방의 포로수집소 또는 임시수용소로 이송하는 도중이었다. 이때는 전선의 유동성과 전투상황의 혼란으로 포로들을 철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후방으로 이동하는데는 주로 야간을 이용하였고 또한 이동기간이 수일이 소요되었다는 점들 때문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시기에는 특히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던 한국군의 탈출은 더욱 용이했다. 부대원이나 고향사람끼리 주로 2~3명씩 한팀을 이루어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방으로 이송되고 난 후에는 탈출이 어려웠고, 미군을 포함하는 유엔군들은 한국지형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탈출은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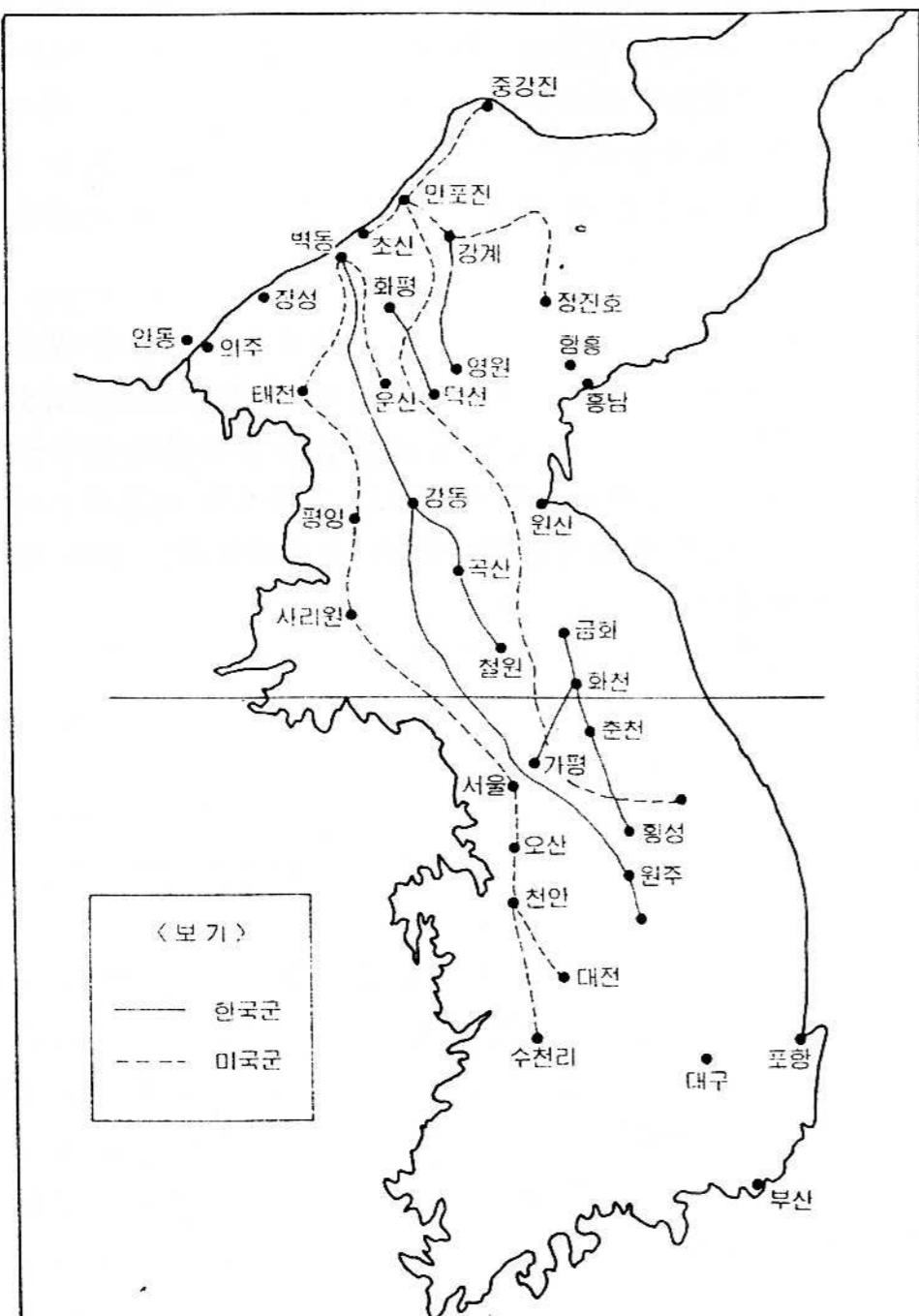
다음쪽의 지도는 한국전쟁중 공산군측에 의해 포로가 된 국군과 유엔군을 북한내 후방으로 이송하는 경로인데 주로 함경남북도 소재의 포로수용소로 이송하였다. 북한의 가장 후방지역으로 이송하여 탈출을 방지하고, 이지역에 밀집해 있는 탄광의 채탄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포로들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억류된지 45년이 지금도 국군포로들은 주로 이지역에서 집단거주하고 있다.

(23)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158.

미 육군의 경우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포로가 된 수의 약 10%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에는 이런 통계자료가 없지만 아마도 미군보다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

북한으로의 포로 후송 경로



<출처>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35.

V. 포로의 북한억류생활 실태

북한은 1964년 4월부터 1969년까지 주민등록 사업을 실시하여 1971년 2월에는 일제시대 및 한국전쟁의 행적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을 3계층(핵심, 동요, 적대) 51대 부류로 분류하였다.(24)

이 당시 억류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은 40년 이상을 북한의 최저 계층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국군포로의 북한내 사회적 지위는 노동당의 정책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져 신분, 직업, 교육, 결혼, 2세, 주거이전등에서 북한 일반주민보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최저의 신분인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처우를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의 북한내 사회적 역할도 가장 하위계층의 지위에서 생사와 싸워야 하는 가장 힘든 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전투에 참전하거나 노동력으로 쓰이다가 수용소 및 교화소 생활을 수년에서 십수년 한 후 50년 후반부터 탄광에 배치되어 40여년간 단 한번의 외부 출입도 못했고, 그들의 자녀들도 탄광의 쟁내작업에 배속되어 강제노동이 행해지고 있다.

1. 포로 직업

포로들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탄광, 광산, 임업, 수직갱 건설, 제철소등과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다.

휴전후 광산, 탄광지역에 배치된 국군포로들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5년을 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포로중 포로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대외선전용으로 또한 포로들의 내부 불만무마용으로 당이나 공무원등 신분 전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24). 「성곡논총, 제29집 2권」. 재단법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8. p.454.

양순용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 무수히 많은 광산과 탄광이 있고 일제 때부터 개발된 것이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지만 보수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포로의 2세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주로 탄광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2. 포로의 결혼

북한 당국은 1956년 국군포로를 인민군에서 제대시키면서 공민증을 발급하고, 결혼을 권장하였다고 한다. 결혼 비용으로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고 수용소나 일본인 건물등을 개조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살림집으로 배정해 주었다고 한다.

국군포로들은 56년이후 결혼을 하였는데 그 대상은 탄광지역에서 살다가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녀자, 전쟁으로 혼자 된 부녀자, 월남자 가족 그리고 그들의 2세와 주로 결혼했다고 한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국군포로들은 주변의 소개로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3. 북한 생활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사용하는 가옥은 수용소내에 자체로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지은 집이나 일본인 집을 개조해서 살고 있다.

북한은 60세가 넘으면 연로보장(정년퇴임)이라고 하여 노동을 하지 않는다.

양순용씨등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최근 북한은 경제·에너지·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4~5년 동안 식량배급 체제가 마비되어 식량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광산이나 탄광에 종사하는 포로나 그들의 2세 또한 식량배급이 원활하지 못해 배고픔속에 작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진다. 장무환씨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5식구가 옥수수 15.Kg을 배급받은 것이 전부”는 증언을 한 바 있어 식량사정을 짐작케 하고 있다.

탄광이나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다른 직종에 일하는 북한

주민보다는 약간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동량에 비하면 임금이 적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국군포로의 신분이면 봉급도 그리 많은 편이 되지 못하고, 설사 돈이 있다해도 무엇하나 살 수도 없고, 무엇보다 먹고사는 것이 급한 만큼, 국정가에 비해 수배에서 수백배의 웃돈을 주고 사야하는 생필품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순용씨는 “가재도구조차 하나 하나 팔아먹고 이제 남은 것은 이불 뿐이다”라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북한에서 주거지 선택, 여행, 친인척 방문등은 일반주민들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포로신분으로서는 극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포로출신들은 직장을 옮기는 것을 제외하면 45년간을 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양순용씨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백여명의 포로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을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가능한데 일반 주민들 조차 기관에서 까다롭게 굴어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니, 포로출신들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일단 무임승차하여 기차안에서 안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들과 귀순자,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북한사회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이후 때마침 홍수와 가뭄이 겹쳐 식량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약 절반정도로 줄었고, 사정이 이런데도 식량배급과정에서 절취가 이루어지고 있어 식량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남한 소식을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통해 전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 일본이고, 다음을 한국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의 생활실태는 본 자료집 별첨자료중 양순용씨와의 면담을 녹취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4. 포로 2세

포로 2세는 아버지가 포로라는 것 때문에 교육, 직장, 결혼, 신분등 생